

건강검진 제3자 결과활용 동의서

- 일반건강검진(근로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포함), 암검진

본인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검진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들었으며, 이에 검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검진 자료의 활용), 제19조(건강검진 사후관리), 제20조(조사, 연구사업 등)에 따라 검진 후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관리 정보 제공, 적절한 의료기관 안내, 건강검진의 홍보,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을 안내 받을수 있으며, 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1항, 제129조(일반건강진단),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에 따라 사후관리 등 검진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본인의 문진자료 및 건강검진(진단) 결과, (인지기능장애 결과포함),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의 정보를 사업자 및 본원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검진결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되며, 기타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작성 후에도 동의자가 원하는 경우 동의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활용기관: 보건소, 국립암센터, 질병관리청, 공단, 치매안심센터, 근로자사업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년

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_____ (서명)

생년월일 : _____



오 산 한국 병 원